

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

폐지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26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1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11. 26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주민생활과장 정영량)

가. 폐지이유

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(법률 제20415호, 2024. 3. 26. 공포, 2026. 3. 27. 시행)에 따라 「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」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「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: 「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」

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성별영향평가): 해당사항 없음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598호

- 예고기간: 2025. 10. 10.~2025. 10. 30.(20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마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- 본 폐지조례안은 2021. 11. 10. 제정하여 고성군 통합돌봄추진단을 설치하고 돌봄이 필요한 군민에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했으나,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: 돌봄통합지원법)이 제정되고,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‘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’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신설하고, 현행 「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」는 2026년 3월 27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검토 결과, 조례 폐지 취지가 합리적이며 폐지 조례안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어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1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